

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

관세청

하반기

2021년
달라지는
관세행정

1

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·분할납부 지원 강화

종 전

- 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
 - 대상
 - 최근 2년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체납사실이 없을 것
 -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지원한도
 - 전년도 납부세액의 50% 범위 내

달라지는 내용

- 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폐지
 - 대상
 - < 좌 동 >
 -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
 - 지원한도
 - 지원한도 한시 폐지

기대효과 코로나-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**특별 세정지원**으로 자금난 완화

시행일 '21. 5. 31. 시행(특별세정지원 대책)



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

증 전

□ <신 설>

달라지는 내용

□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 신설

· (등록대상)

-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'통신판매업자*'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

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

※ 다만, 시행일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'22.6.30.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(등록유예)

기대효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하여 **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**

시행일 '21. 7. 1. 시행
〔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〕제정



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

종 전

□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
다음 요건 충족시 일시양륙신고 생략

- 생략 요건
 - 컨테이너 화물일 것
 -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일시양륙 불가피
 -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,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·관리
 -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 재적재

달라지는 내용

□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에 '**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**' 추가

- 생략 요건
 - 컨테이너 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
 - < 좌 동 >
 -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,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·관리
 - < 좌 동 >

기대효과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
일시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 해소

시행일 '21. 6. 4.(지침 시행), '21. 9월 중
[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] 제15조 개정]



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(CTA) 규제 완화

종 전

□ 하기장소* 반입 없이 계류장 내
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(CTA)**에
환적화물 일시 보관

*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
있는 보세구역

** Cargo Transit Area: 환적화물
일시대기 장소

• CTA 보관 요건

- 여객기간 환적화물

- < 신 설 >

- 입항 후 24시간 이내

- ULD* 해체 및 재작업 불가

* 항공기용 탑재용기(Unit Load Device)

달라지는 내용

□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(CTA)에
환적화물 일시 보관 시 **규제 완화**

• CTA 보관 요건

- < 좌 동 >

- **화물기와 여객기간** 환적화물 **허용**

- 입항 후 **7일** 이내(보관기관 **연장**)

- ULD 해체 및 재작업 **허용**(보수작업 제외)



기대효과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

시행일 '21. 6. 4.(지침 시행), '21. 9월 중
[「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」
제4조 개정]



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등

종 전

-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운영
-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
 - 대상협정 : 한-EU FTA
 -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 : 원본

달라지는 내용

-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 관세 적용 **절차 개선 및 대상 확대**
- < 좌 동 >
 - 대상협정 : 한-EU FTA, 한-영 FTA, 한-EFTA FTA, 한-러키 FTA
 -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: 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

기대효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및 FTA 적용 기회 확대, 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의 비대면화 · Paperless화 촉진

시행일 '21. 7. 1. 시행
 「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」시행



6

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

종 전

-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
- 연 1천분의 18

달라지는 내용

-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
- 연 1천분의 12

기대효과 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**기업의 부담완화**

시행일 '21. 7. 30. 시행

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〕



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

종 전

□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

-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
 -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
그 실적의 30%내 포상

달라지는 내용

□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확대

-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
 - 위원회에서 검거 기여정도 등을
심의하여 **최대 50%까지** 공로 인정

기대효과 밀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
일반 국민의 **마약 밀수신고를 독려**하고
마약 밀수입 범죄를 **관세 국경 단계에서 차단**

시행일 '21. 6. 1. 시행
〔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〕제9조 개정



특혜(FTA, 일반특혜)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

종 전

-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
-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
- < 신 설 >

달라지는 내용

-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
- < 좌 동 >
 -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

기대효과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**기업의 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**

시행일 '21. 7. 1. 시행
〔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지침〕

